

도 로 표 지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다.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터체인지명“이란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을 말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안내지명으로 표기한다.

별표 2의 제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 비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방향표지를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격과 설치방법은 410-2(B), 410-4를 준용하며,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현수식 도로표지는 양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5 (생략) 6. <u>(신설)</u>	제2조(정의) 1~5 (현행과 같음) 6. <u>“인터체인지명”이란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을 말한다.</u>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5조 관련) 1. 안내지명의 선정 가.~라. (생략) 마. (생략) (1)~(4) (생략) (5) <u>(신설)</u>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5조 관련) 1. 안내지명의 선정 가.~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안내지명으로 표기한다.</u>
2. (생략)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사항 가.~라. (생략) 마. 비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방향표지를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격과 설치방법은 410-2(B), 410-4를 <u>준용한다.</u>	2. (현행과 같음)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사항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비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방향표지를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격과 설치방법은 410-2(B), 410-4를 <u>준용하며, 도</u>

바.~사. (생 략)	시지역에 설치되는 현수식 도로 표지는 양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바.~사. (현행과 같음)
--------------------	---